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28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선거 방송의 한국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3
2.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규정 명문화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17.
3. 회 부 일 : 2024.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선거 방송의 한국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개정안은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는 것을 현행 “임의규정”(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생략)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u> ⑦ · ⑧ (생략)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방영하여야 한다.</u> ⑦ · ⑧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u> ③ · ④ (생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방영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u>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⑤ ~ ⑫ (생략)	<u>태료를 부과한다.</u> 1. 제70조제6항(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2항(제73조제4항·제74조제2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 ⑫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방송광고(제70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72조) 등을 실시할 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후보자연설의 방송 등이 한국수어로 통역되거나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가 적어 청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¹⁾

1) 지방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정보들이 수어로 통역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자료출처: 아시아타임즈(2022.5.30.), “선거 사각지대① 유권자지만 소외받는 청각장애인(농인)”)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현행 “임의규정(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자막 관련 규정 》

구분		현행	개정안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70⑥	수어 또는 자막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화</u>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72②	방영 <u>재량</u> 규정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71③	준용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재량</u>)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137의2⑥		
경력방송(후보자 사진·성명·주요 경력 등 알림) (§72② 준용)	§73④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2② 준용)	§74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72② 준용)	§82④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79	규정없음	현행과 같음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8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포함)	§82의2⑫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82의2⑫ 준용)	§82의3②	준용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정당의 정책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선거기간) (§82의2⑫ 준용)	정당법 §39③		

한국수어(자막) 방영 규정을 의무화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청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후보자, 방송시설, 언론기관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의무와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용부담” 측면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의무화하는 경우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후보자, 방송시설 등의 비용부담²⁾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① 후보자토론회에서 한국수어통역방송을 실시할 경우 수어통역사에게 30분당 1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② 자막방송의 경우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2024)」에 따라 제작단가가 분당 약 2천원 내외로 산정됨.³⁾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협회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보도·편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으로 인해 광고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⁴⁾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호를 위한 보다

2)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하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2024.7.26.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3)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⁵⁾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현행법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낸 헌법소원에서 “수어·자막방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⁶⁾.

- 4)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 영상에 방송사가 임의로 수어 화면을 넣을 경우 광고주 측이 광고를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와 이미지가 가려져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후보 또는 정당, 광고주 측이 광고 영상에 수어를 넣어 제작하도록 하고 방송사는 이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방송협회 의견임. 아래는 수어 화면을 넣기 전과 후의 비교 예시임.



- 5) 청각장애인 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기보다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어방송 또는 AI기반 아바타 수어방송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것이 한국방송협회 의견임.
- 6) 다만,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의견으로서 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국어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청각적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보편적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거방송에서는 한국수어·자막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② 장애인방송 고시상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은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설비나 기술수준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보도·편성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음.

《 헌법재판소 2020.8.28. 선고 2017헌마813 판결 》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하위규범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 의무화가 특히 자막방송의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다. 장애인방송고시에 의하여 자막방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송광고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정당이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송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이 있고, 고시의무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송의 비용을 전부 부담할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고시에서 일정 비율 한국수어방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적어도 최근 전국단위 주요 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은 100% 한국수어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의규정으로 있는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선거인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선거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등이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등을 갖추었거나 갖추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한국수어·자막방송의 실시 여부가 반드시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의 수범자의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이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헌재 2009. 5. 28. 2006헌마285 참조).

한편 청각장애선거인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제59조 단서 제2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제59조 단서 제3호),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약집(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제60조의4), 명함(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93조 제1항 단서 제1호),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1조 제6항, 제61조의2 제4항), 선거벽보(제64조), 책자형 선거공보(제65조), 책자형 선거공약서(제66조), 현수막(제67조), 어깨띠 등 소품(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제68조), 신문광고(제69조), 인터넷광고(제82조의7) 등의 선거운동과 인쇄매체나 인터넷언론사의 보도 등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불이익처분” 측면에서 개정안은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액수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그 정도가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함.⁷⁾

참고로, 현행법상 과태료(제261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⁸⁾.

7) [헌법재판소 1998.5.28.선고 96헌바83]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8)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제82조의2제12항, 제82조의3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해당 의무의 주체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기 때문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에서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100% 실시하고 있음.(미실시 없음)

《 현행법상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법 제261조) 》

구분		의무위반사항(예시)
제1항	5천만원 이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제2항	3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1천만원 이하	·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경우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항	5백만원 이하	· <u>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의 설치 관련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u>
제6항	3백만원 이하	·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현행범인 또는 준형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	2백만원 이하	· 선거에 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신고,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경우 · 투표용지모형을 훼손, 오손한 경우
제8항	1백만원 이하	·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여론조사 기관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규정 명문화

개정안은 투표소에 점자유도블럭⁹⁾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⑩ (생략) <u><신설></u>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u>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여야 한다.</u>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9) “점자유도블럭”이란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한 울퉁불퉁한 블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김새는 다음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련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소를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되,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개정안은 시행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과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가 취하여야 할 보편적 의무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의

10)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 증대와 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령과 개정안의 비교 》

현행	개정안
「공직선거법」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⑪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¹²⁾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규정¹³⁾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 의무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표소는 사회기반시설을 임차하여 임시로 설치·운영되므로 제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에 대한 안내 및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투표소마다 선거사무원 중 2인을 투표안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사전에 장애인단체·정당 등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이 불비·미비한 투표소에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임.

12)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32

참고 1 한국수어통역방송 및 자막방송 제공시 소요비용 관련

□ 한국수어통역 사례금 지급기준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최근 수립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리지침’(중앙토론위-332, 2024. 1. 31.)의 기준에 따라 한국수어통역 방송을 실시할 경우, 수어통역사에게 **30분당 1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지급 기준(협회지급 불가)

- 1회 기준 단가: 30분당 15만원(30분 이하라도 15만원)
- 2인 교대 시 총 시간 대비 수어통역시간 비율로 사례금 지급

- 지급기준은 2022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 지원본부’의 ‘수어통역사 수당 재검토 요청’(중앙토론위-1160, 2022. 4. 26.)에 따른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

※ 한국농아인협회 이외에도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등의 단체가 있으나,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등록관리하는 한국농아인협회의 기준을 따름.

-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 개최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120분 토론회 기준 1시간씩 2인 교대 운용 시 1인당 30만원 지급)

-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방송연설 및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한국수어통역방송을 실시할 경우 동일하게 **30분당 15만원(30분 이하 역시 동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단, 해당 비용은 협회의 기준이나 시장 단가, 해당 기관 및 방송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덧붙임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요율표(참고 2)

□ 자막방송 관련 비용 기준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막방송과 관련하여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2024)’의 기준을 따름.

※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2024)

라. 자막방송 지급 기준

구 분		본 사	지 역	비 고
공영 방송사	KBS	무료	분당 1,765원* 이내	2개 이상의 중계방송사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 각각 지급
	MBC	분당 2,240원	MBC 본사 지급기준 이내에서 지역방송사와 협의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MBC 본사 지급기준 이내에서 중계방송사와 협의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결과 공고’(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2022. 10.)

※ 위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계방송사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이후 분당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지급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22-17호, 2022. 12. 20.)」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방송물의 평균 제작단가를 매년 말 공고하고 있어,
- 2024년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개정 시 이를 기준으로 일부 반영한 것임.
※ KBS는 대부분 해당 평균 제작단가 이내로 자막방송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MBC는 본사의 외주업체 비용을 기준으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자막방송은 대부분의 방송사가 외주업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고, 시장 가격도 차이가 있어 평균적인 비용 산출에는 한계가 있으나,
- 공영방송사의 단가를 평균하여 봤을 때 분당 약 2천원 내외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임.
단, 예상 금액일 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2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요율표(2022년)

[별표 1]

[수어통·번역 및 수어교육 수당기준표 I]

수당은 통역사 1명 기준(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당	비 고
행 사	국 내	체육대회	100,000	- 행사는 최소 2인의 통역사 배치. - 전국구와 지역행사는 차등적용. - 행사규모나 동선에 따라 인원조정 하여 배치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 - 지역에 따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는 별도 지급. - 리허설도 통역으로 간주 - 사전 시나리오등 정보 공유 필수.
		장애시설	70,000	
		의료기관	200,000	
		회의 및 면접	150,000	
		강연 및 세미나	200,000	
		문화	150,000	
		공연/연극	200,000	
		전시 및 박람회	100,000	
		마케팅	500,000	
		워크숍	200,000	
		각종 기념식	200,000	
		발표회	150,000	
		장애인영화제	100,000	
		학교	150,000	
		기업	300,000	
		홍보물 제작	30분/건당 1,000,000	
		여행	1일 8시간 300,000	- 규모에 따라 통역사 배치인원 조정. - 여행경비 별도 및 통역에 필요한 물품 제공. - 최소 2인 이상 배치.(출발일 도착일 일정 포함) - 항공료, 숙박 및 식대 별도 지급.
	해외	1일	500,000	
	기타	1시간	100,000~150,000	
공공 기관	경찰서	1시간	50,000	- 법원 통역요율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식대, 교통비 별도.
	검찰청		70,000	
	법원일반심리	1회 심리	50,000	
	지방/가정법원	1회 재판	70,000	
	고등법원		100,000	
	대법원		150,000	
선 거	공개유세	전당대회	500,000	1회당 2명 배정. 1시간당 산정금액이며 3시간 초과는 협의.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1시간당) - 후보 1인 10분 이내. - 홍보시간 5분 내외. 30분이내 1편당.
		거리유세	200,000	
	방송	공개토론회	300,000	
		선거방송 후보연설	300,000	
		홍보 1편당(다회송출)	500,000	
		유튜브 1편	300,000	
번 역	기관	한국어↔수어 10분 기준	150,000	난이도에 따라 차등요율제 적용.
	방송		200,000	
	법률/법원		200,000	
	감수 및 평가	수어↔한국어	150,000	
	영상물 음성통역	10분 기준	200,000	